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축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 보고

1992년 5월 9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과정

가. 제출일자및 제출자 : 1992. 4. 28, 남구청장

나. 회부 일자 : 1992. 4. 30

다. 상정 일자 : 제12회(임사회)제1차 총무위원회(1992년 5월 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추천식)

가. 제안 이유

0. 내무부 세제22670-114(92.3.26)호 및 세정22670-487(92.4.7)호의 "공장이전 축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준칙)"에 의함.

0.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으로 공업지역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그 배율 초과 토지는 종합 합산하게 됨으로서 감면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 골자

0. 특별시, 직할시의 시지역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 단지와 공업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별도 합산 과세하여 왔으나 공업 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에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 과세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종합 합산 과세에서 오는 세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므로 불필요 하게 된 현재의 조례를 폐지

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축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폐지안의 목적은 공업단지및 공업지역이외에 산재해 있는 생산공장의 현실을 감안 종합토지세의 부과시 생산 공장에게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14, 제1항 제1호가 개정된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조 례는 폐지되는 것이 보다 많이 생산공장,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임종하 위원	세무1과장 추찬식	'현재 남구 관내 주거지역내의 공장수는?	' 51개가 있음.

5. 토론 요지

" 없음 "

6. 심사 경과

" 원안 가결 "

7. 소수외견의 요지

" 없음 "